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정보의 입력 주체, 입력 시기, 제출 내용 등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17조)
- 나.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3조)
- 다. 기반시설 정보의 신뢰성 확보, 보존, 공개 및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의 역할을 규정(안 제24조부터 제27조)
- 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백업, 보안, 장애복구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의 역할을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전문, 별첨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반터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기반터에 자료 및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를 검토·관리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기관, 유지관리 대행자 및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반시설 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등

제5조(기반터 자료 및 정보의 종류) 기반터를 통해 관리하는 자료 및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3.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5.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기반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개요
 2. 기본계획 전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기반터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등 세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입력)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 개요
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을 영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받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 개요

2. 실행계획 전문(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행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반터에 제출한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반터에는 입력하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위임·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개선공통기준과 성능개선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능개선공통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
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

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칙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관한 사항(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2.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

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

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14조(비용지원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지원 정보(대상시설,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2. 집행 정보(편성금액, 집행금액, 비목별 사용내역 등)

② 규칙 제7조제3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이하 “충당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에 따라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부과·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징수 근거, 부과·징수 금액·내역 등)
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내역 등)

제16조(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①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

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사항) 제5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3장 기반시설 정보입력 및 확인

제18조(기반시설 정보의 종류) 기반터로 관리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정보: 시설물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설치위치 등

2. 기반시설 시설정보: 해당 시설물의 연장, 구조형식, 규모 등 시설 제원
3. 기반시설 유지관리정보: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물 점검·진단결과,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내용, 일자, 투입비용

제19조(기반시설의 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시설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에 따라 관리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시설정보가 생성·변경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시설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리정보 및 시설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변경된 경우 별표 4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위탁 받

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반시설 정보관리 등

제24조(정보의 신뢰성 확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등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기반시설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이력정보의 추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보존)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정보를 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개방)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터에 등록된 이력 정보 및 정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및 계획 수립, 조사,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권한 부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검토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등을 매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반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 설명에 따른다.

제29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 및 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가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도난·훼손·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입력사항(제12조 관련)

구분	항 목	내 용
기반시설	선정정보	선정된 기반시설 정보 입력(DB 연계)
	예산관련	확보 :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확보 비용 (관리계획 대비 비율 포함) 집행 :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집행 비용 (관리계획 대비 비율 포함)
	최소유지관리기준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여부(Y / N)
	인적·물적 피해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여부 (Y / N, 00건)
	조직·인력 구성	해당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 (00명)
	관리정보	중간점검 실시결과 입력 (성능등급, 유지관리비용, 성능개선 정보 등)
관리주체	선정정보	선정된 관리주체 입력
	예산관련	확보 :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확보 비용 (관리계획 대비 비율 포함) 집행 :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집행 비용 (관리계획 대비 비율 포함) ※ 관리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만 인정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여부(Y / N)
	인적·물적 피해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여부 (Y / N, 00건)
	조직·인력 구성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인원 (00부서 / 00명)
	관리정보	중간점검 실시결과 입력 (실행계획 수립, 조직·인력, 예산 등)

관리정보 분류체계(제19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
시설번호	시설번호	관리번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할 기반시설번호
	정보관리	기반법 대상여부	기반시설관리법 대상 시설 여부
		관리계획 포함여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포함 여부
		기반시설물명	기반시설(물) 고유 명칭
		FMS 번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부여번호(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일 경우)
		시설물종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대상시설물 종별 구분(제1,2,3종)
		대표관리시스템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중 대표되는 시스템 명칭
		대표 URL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중 대표되는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운영시스템 관리번호	대표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시설 관리번호
		운영시스템 관리번호(부)	대표관리시스템 외의 관리대장 등에서 관리되는 시설 관리번호
		사용여부	기반시설의 사용여부(Y: 사용, N: 폐쇄)
관리체계	시설유형	기반시설유형	기반시설관리법에서 구분하는 유형 구분 (예,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구분	기반시설관리법에서 구분하는 시설 구분 (예, 도로시설 등)
		시설물구분	시설의 개별법에서 시설물을 구분하는 그룹 또는 유형
		시설물종류	개별법에서 구분하는 시설물
	관리체계	관리체계1	시설에 대한 분류체계로 대분류
		관리체계2	시설에 대한 분류체계로 중분류
		관리체계3	시설에 대한 분류체계로 소분류
		관리체계4	시설에 대한 분류체계로 세분류
	기관구분	관리주체유형	관리주체의 성격을 구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자사업 자/민간관리자)
	기관관리	관리감독기관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
		관리계획 수립기관	기반시설의 관리계획수립기관이며 별도의 주무관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기관과 동일함
		주무관청등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주체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이며 기반시설관리 실행계획 수립기관
		관리주체 하위조직	기반시설 관리주체의 기반시설 관리 권한 등을 위임·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 등
		기관상세	관리주체 하위조직 이하의 부서 또는 조직에 대해 기재
	관할구역	법정동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리
		법정동 코드	시설물이 주소에 대한 법정동코드 10자리
		세부주소	시설물이 주소에 대한 법정동 외의 세부주소
	위치좌표	시점	경도/위도
		종점	
건설정보	공사정보	공사명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의 발주 공사명
		발주형태	공사 발주의 민간/공공에 대한 형태
		국가재정 부담여부	Y/N
		민자사업여부	
		민자사업 제안방식	
		민자사업 추진방식	
		민자투자사업명	
		운영기간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준공일자	YYYYMMDD
		준공일자(대체)	YYYYMMDD
		사용승인일	(YYYYMMDD)
		총공사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
		국가재정 부담여부	Y/N
	설계정보	설계사	설계 업체명
		설계기간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설계비(원)	
		감리자	감리 기관명
		감리기간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감리비(원)	
		내진설계 적용유무	Y/N

시설정보 분류체계(제20조 관련)

- 도로(8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주요시설	차도	총연장(m), 포장여부, 차로별 연장(m), 포장형식, 포장형식 설명
	교량	연장(m), 폭원(m), 차로수(상/하행), 최대경간장(m), 상부구조형식, 상부구조형식설명, 설계하중, 설계하중설명
	절토사면	연장(m), 단일수평연장(m), 최대연직높이(m), 절토사면분류, 절토사면분류설명
	보도육교	연장(m), 폭원(m), 통과제한높이(m), 상부구조형식, 상부구조형식설명
	터널	연장(m), 폭원(m), 높이(m), 차로수(상/하행), 터널형상, 터널형상설명, 주요공법, 주요공법설명
	지하차도	연장(m), 폭원(m), 높이(m), 차로수(상/하행), 대표형상, 대표형상설명
	옹벽	연장(m), 최대높이(m), 옹벽분류, 옹벽분류설명
부시설	지하통로	연장(m), 폭원(m), 대표형상, 대표형상설명

- 철도(47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선로시설물	도상	종류, 종류설명, 연장
	레일	종류, 종류설명, 연장
	분기기	종류, 종류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침목	종류, 종류설명, 수량
구조물	교량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연장, 폭원, 경간구성, 내진설계유무
	터널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연장(m), 폭원(m)
	옹벽	종류, 종류설명, 공법, 공법설명, 높이, 연장
	비탈면	종류, 종류설명, 공법, 공법설명, 높이, 연장
	지하도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구교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하수로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배수로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방호벽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승강장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여객통로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연장
건축물	역사	종류, 종류설명, 형식, 형식설명, 면적, 높이, 층수, 이용객수
	역사 외 건축물	종류, 종류설명,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면적, 높이, 층수, 내진설계유무
	건축설비	종류, 종류설명, 규격, 규격설명, 용량, 용도, 용도설명, 형식, 형식설명, 수량
전력시설물 /송변전	가공송전선로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지중선전선로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교류변전기기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직류변전기기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제어설비(송변)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부대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전력시설물 /전차선로	지지물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장치류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기기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안전보호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합성전차선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급전선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전력시설물 /전력설비	제어설비(전력)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전력기기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소방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조명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배전선로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신호시설물	열차검지장치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열차제어장치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선로전환기장치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안전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건널목안전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통신시설물	선로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전송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무선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역무통신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전화교환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영상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역무자동설비	내구연한, 종류, 종류설명, 규격, 용량, 용도, 형식, 형식설명, 시설량

- 항만 및 어항

① 항만(14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외곽시설(O)	방파제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설계파 파고(m), 조위(DL. m), 마루높이(m), 연장(m), 피복재 규격(tonf TTP), 상치공 폭(m), 방층재 개수, 계선주 형식, 계선주 형식설명
	방사제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조위(DL. m), 연장(m), 높이(m)
	파제제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설계파고(m), 조위(DL. m), 마루높이(m), 연장(m), 상치공 폭(m), 방층재 개수, 계선주 형식, 계선주 형식설명
	도류제	조위(DL. m), 연장(m), 제체의 높이(m)
	갑문	최대통과 선박규모(DWT), 갑문형식, 갑문형식설명, 갑문연장(m), 갑문 폭(m), 갑문 높이(m), 갑문 길이(m), 갑벽구조형식, 갑벽구조형식설명, 충수시설 유무(Y/N), 비상발전설비 유무(Y/N)
	호안	호안종류, 호안종류설명, 호안연장(m)
임항교통시설	교량	연장(m), 총폭(m), 경간수(EA), 상부구조형식, 상부구조형식설명, 교량설계하중등급(DB), 교량설계하중등급(DB)설명
계류시설(M)	안벽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형식, 형식설명
	소형선부두	연장(m), 폭(m), 선박접안능력(DWT)
	잔교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형식, 형식설명
	부잔교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돌핀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형식, 형식설명
	선착장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연면적(m ²),
건축시설	건축물	건축물 용도, 구조형식, 전체층수, 지상층수, 연면적(m ²), 건축물 높이(m), 층별 용도

② 어항(14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외곽시설(O)	방파제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설계파 파고(m), 조위(DL. m), 마루높이(m), 연장(m), 피복재 규격(tonf TTP), 상치공 폭(m), 방층재 개수, 계선주 형식, 계선주 설명
	방사제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조위(DL. m), 연장(m), 높이(m)
	파제제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설계파고(m), 조위(DL. m), 마루높이(m), 연장(m), 상치공 폭(m), 방층재 개수, 계선주 형식, 계선주 형식설명
	도류제	조위(DL. m), 연장(m), 제체의 높이(m)
	호안	호안종류, 호안종류설명, 호안연장
	돌제	조위(DL. m), 형식분류, 형식분류설명, 연장(m)
계류시설(M)	안벽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형식, 형식설명
	잔교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형식, 형식설명
	부잔교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선착장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연면적(m ²)
	선양장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연면적(m ²)
	물양장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연면적(m ²)
	선류장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연면적(m ²)
	도선장	선박접안능력(DWT), 연장(m), 폭(m), 연면적(m ²)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이착륙시설	활주로 및 착륙대	공항운영등급, 공항운영등급설명, 이착륙장 등급, 이착륙장등급설명, 설치관리자 지정여부(Y/N), 1활주로 연장(m), 1활주로 폭(m), 1활주로 착륙대 연장(m), 1활주로 착륙대 폭(m), 1활주로 포장상태지수(PCI), 1활주로 사용연수(년), 2활주로 연장(m), 2활주로 폭(m), 2활주로 착륙대 연장(m), 2활주로 착륙대 폭(m), 2활주로 포장상태지수(PCI), 2활주로 사용연수(년), 3활주로 연장(m), 3활주로 폭(m), 3활주로 착륙대 연장(m), 3활주로 착륙대 폭(m), 3활주로 포장상태지수(PCI), 3활주로 사용연수(년)
	유도로	평행유도로 개수(본), 평행유도로 면적(m ²), 평행유도로 포장상태지수(PCI) 평균값, 직각유도로 개수(본), 직각유도로 면적(m ²), 직각유도로 포장상태지수(PCI) 평균값, 고속탈출유도로 개수(본), 고속탈출유도로 면적(m ²), 고속탈출유도로 포장상태지수(PCI) 평균값
	계류장	계류장 면적(m ²), 동시주기능력(대), 일반항공기 주기능력(대), 소형항공기 주기능력(대), 계류장 포장상태지수(PCI)
항공등화시설	조명시설	활주로조명 개수, 진입조명 개수, 유도로조명 개수, 신호조명 개수, 관리검사 실시여부(Y/N), 비행검사 실시여부(Y/N)
항행시설	관제통신시설	관제통신시설 개수(CH), 관리검사 실시여부(Y/N), 비행검사 실시여부(Y/N)
	계기착륙시설	계기착륙시설 개수(식), 관리검사 실시여부(Y/N), 비행검사 실시여부(Y/N)
	레이더시설	레이더시설 개수(식), 관리검사 실시여부(Y/N), 비행검사 실시여부(Y/N)
	레이더처리장치	레이더처리장치 개수(식), 관리검사 실시여부(Y/N), 비행검사 실시여부(Y/N)
건축시설	여객터미널	국내선 여객터미널 연면적(m ²), 국내선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여객터미널 전체 층수(층),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상 층수, 국내선 여객터미널 구조형식, 국내선 여객터미널 구조형식설명, 국내선 여객터미널 높이(m), 국내선 여객터미널 내진성능확보여부(Y/N), 국제선 여객터미널 연면적(m ²), 국제선 여객터미널 전체 층수(층), 국제선 여객터미널 지상 층수(층), 국제선 여객터미널 구조형식, 국제선 여객터미널 구조형식설명, 국제선 여객터미널 높이(m),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진성능확보여부(Y/N), 탑승동 연면적(m ²), 탑승동 전체 층수(층), 탑승동 지상 층수(층), 탑승동 구조형식, 탑승동 구조형식설명, 탑승동 높이(m), 탑승동 내진성능확보여부(Y/N)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 연면적(m ²), 화물터미널 전체 층수(층), 화물터미널 지상 층수(층), 화물터미널 구조형식, 화물터미널 구조형식설명, 화물터미널 높이(m), 화물터미널 내진성능확보여부(Y/N)
	관제탑	관제탑 연면적(m ²), 관제탑 전체 층수(층), 관제탑 지상 층수(층), 관제탑 구조형식, 관제탑 구조형식설명, 관제탑 높이(m), 관제탑 내진성능확보여부(Y/N)
	기타건축물	건축물1 명칭, 건축물1 용도, 건축물1 연면적(m ²), 건축물1 전체 층수, 건축물1 지상 층수, 건축물1 구조형식, 건축물1 구조형식설명, 건축물1 높이(m), 건축물1 내진성능확보여부
기계시설	수하물처리시설(BHS)	컨베이어 연장(km), 관리그룹별 구분, 관리그룹별설명
	급유시설	저장탱크 용량(배럴), 관리그룹별 구분, 관리그룹별설명
전력전기 소방시설	전기소방시설	화재수신반(개), 수동발신기(개), 화재감시기(개), 소방시설검사 실시여부(Y/N)
	수변전시설	수배전만(면), 비상발전기(개), 변압기(개), 관리검사 실시여부(Y/N), 정기검사 실시여부(Y/N)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토목시설	교량	연장(m), 폭원(m), 차로수, 최대경간장(m), 상부구조형식, 상부구조형식설명, 설계하중, 설계하중설명
	갑문	문비수(개), 갑문 폭(m), 갑문 높이(m), 갑문 길이(m), 암거련수, 제방연장, 제방고, 제방폭, 관리교량 유무(Y/N), 인근유수지명
	옹벽	연장(m), 최대높이(m), 옹벽분류, 옹벽분류설명
	터널 및 지하차도	연장(m), 폭원(m), 높이(m), 차로수(상행), 차로수(하행), 터널형상, 터널형상설명, 주요공법, 주요공법설명
	수도시설	수도배관(관로) 연장(km), 수도배관(관로) 관중, 수도배관(관로) 관중설명, 수도배관(관로) 관경(mm), 수도 공급용량(m ³ /일), 취수장 개수, 취수장 시설용량(m ³ /일), 정수장 개수, 정수장 시설용량(m ³ /일), 가압장 개수, 가압장 시설용량(m ³ /일), 배수지 개수(지), 배수지 시설용적(m ³)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연장(km), 하수관로 관중, 하수관로 관중설명, 하수관로 관경(mm), 일평균 하수처리용량(m ³ /일)
	공동구	구조형식, 구조형식설명, 주요공법, 주요공법설명, 연장(m), 관리연장(m), 최대련수, 공동구 폭(m), 공동구 높이(m), 배수형식, 배수형식설명, 집수정 개소수(개), 환기구 개소수(개), 진출입장소 개소수(개), 전력시설 수용 여부(Y/N), 전력시설 연장(m), 통신시설 수용 여부(Y/N), 통신시설 연장(m), 상수도시설 수용 여부(Y/N), 상수도시설 연장(m), 중수도시설 수용 여부(Y/N), 중수도시설 연장(m), 냉난방시설 수용 여부(Y/N), 냉난방시설 연장(m), 쓰레기수송시설 수용 여부(Y/N), 쓰레기수송시설 연장(m), 가스시설 수용 여부(Y/N), 가스시설 연장(m)

- 수도공급설비(7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상수관로	도수관	도수관 연장(m), 도수터널 연장(m), 도수관로 밸브실 개수(개), 21년 이상(m), 16~20년 이내(m), 11~15년 이내(m), 6~10년 이내(m), 5년 이내(m)
	송수관	송수관 연장(m), 송수터널 연장(m), 송수관로 밸브실 개수(개), 21년 이상(m), 16~20년 이내(m), 11~15년 이내(m), 6~10년 이내(m), 5년 이내(m)
	배수관	배수관 연장(m), 배수터널 연장(m), 배수관로 밸브실 개수(개), 21년 이상(m), 16~20년 이내(m), 11~15년 이내(m), 6~10년 이내(m), 5년 이내(m)
취수시설	취수장	취수형태, 취수형태설명, 취수장 개량/갱신년도, 취수장 시설용량($\text{m}^3/\text{일}$), 펌프실(건축물) 구조형식, 펌프실(건축물) 구조형식설명, 펌프실(건축물) 연면적(m^2), 공급정수장, 취수장 이용률(평균, %), 취수장 정보
정수시설	정수장	정수장 개량/갱신년도, 정수장 시설용량($\text{m}^3/\text{일}$), 일평균 생산량($\text{m}^3/\text{일}$), 정수장 이용률(평균, %), 착수정 개수(지), 혼화지 개수(지), 응집침전기 개수(지), 여과지 개수(지), 정수지 개수(지), 건축물 개수(개), 건축물 연면적(m^2), 송수펌프장 구조형식, 송수펌프장 구조형식설명, 송수펌프장 연면적(m^2)
송수시설	가압장	가압장 시설용량($\text{m}^3/\text{일}$), 가압펌프장 구조형식, 가압펌프장 구조형식설명, 가압펌프장 연면적(m^2), 조절지 시설용량(m^3), 조절지 개수(지), 송수펌프장 구조형식, 송수펌프장 구조형식설명, 송수펌프장 연면적(m^2)
배수시설	배수지	배수지 시설용량(m^3), 총 배수량($\text{m}^3/\text{일}$), 배수지 개수(지)

- 전기공급설비(5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가공선로	전선 및 금구류	선로 관리구간 길이(km), 가공선로 관리구간 길이(c-m), 가공선로 회선수(회선), 지중선로 관리구간 길이(c-m), 지중선로 회선수(회선)
	철탑(구조물)	지지물번호, 지지물 종류, 지지물 종류설명, 지지물의 하단 높이(m), 지지물의 전장 높이(m)
	철탑부지	지지물번호
지중선로	케이블접속함	회선명, 회선코드, 지중선로 회선길이(c-m), 지중선로 회선수(회선), 접속함번호, 상
	전력구	전력구 연장(km), 송전선 수용규모(회선), 배전선 수용규모(회선), 통신 수용규모(조), 전력구 시점 위치, 전력구 종점 위치

- 가스공급설비(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가스관	가스배관	구간명, 평면거리, 상용압력, 운영압력, 관경, 최초가스주입일, 방식방법, 방식방법설명

- 열공급설비(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열수송관	열수송관	관로 연장(km×2열), 배관 연장(km), 최소 관경(mm), 최대 관경(mm), 20년이상 연장(km), 최소 매설심도(m), 최고사용압력(bar), 평균공급압력(bar), 점검맨홀 개소수(개), 핸드홀 설치개소(개), 에어벤트 설치개소수(개), 밸브 설치개소수(개), 노면 주용도

- 통신시설(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본체	본체	연장(m), 통신구 폭(m), 통신구 높이(m), 통신구 런수(런), 배수형식, 배수형식설명, 병행통신구 여부(Y/N), 케이블 연장(m), 집수정 개소수(개), 환기구 개소수(개), 비상발전기 유무(Y/N), 조명설비 유무(Y/N), 중앙통제설비 작동 유무(Y/N), 방재설비 설치 여부(Y/N), 진출입장소 개소수(개), 중요통신시설 연결여부(Y/N), 중요통신시설 등급

- 공동구(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본체	본체	구조형식, 구조형식설명, 주요공법, 주요공법설명, 연장(m), 관리연장(m), 최대런수, 공동구 폭(m), 공동구 높이(m), 배수형식, 배수형식설명, 집수정 개소수(개), 환기구 개소수(개), 비상발전기 유무(Y/N), 조명설비 유무(Y/N), 중앙통제설비 작동 유무(Y/N), 방재설비 설치 여부(Y/N), 진출입장소 개소수(개), 국가중요시설 지정여부(Y/N), 국가핵심기반시설 지정여부(Y/N), 보안시설 지정여부(Y/N), 전력시설 수용 여부(Y/N), 전력시설 연장(m), 통신시설 수용 여부(Y/N), 통신시설 연장(m), 상수도시설 수용 여부(Y/N), 상수도시설 연장(m), 중수도시설 수용 여부(Y/N), 중수도시설 연장(m), 냉난방시설 수용 여부(Y/N), 냉난방시설 연장(m), 쓰레기수송시설 수용 여부(Y/N), 쓰레기수송시설 연장(m), 가스시설 수용 여부(Y/N), 가스시설 연장(m)

- 송유설비(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주요시설	송유관	배관 길이(km), 배관 재질, 배관 재질설명, 배관 관경(mm), 설계압력, 운용(송유)압력, 차단밸브 설치 개소, 차단밸브 설치 간격(km), 차단밸브 설치 간격(km) 설명, 차단밸브 차단기능, 차단밸브 차단기능설명, 차단밸브제어 유무

- 하천(8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물길안정	제방	제방명, 하천수계,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하천기준 좌우위치, 하천기준 좌우위치설명, 제체형식, 제체형식설명, 제방구간 연장(m), 계획홍수량(시점, m ³ /s), 계획홍수량(종점, m ³ /s), 계획홍수위(시점, EL.m), 계획홍수위(종점, EL.m), 여유고(시점, m), 여유고(종점, m), 제방고(시점, EL.m), 제방고(종점, EL.m), 둑마루 폭(시점, m), 둑마루 폭(종점, m), 앞비탈 폭(시점, m), 앞비탈 폭(종점, m), 앞비탈경사, 뒷비탈 폭(시점, m), 뒷비탈 폭(종점, m), 뒷비탈경사
	호안	하천명, 하천기준 좌우위치, 하천기준 좌우위치설명, 호안구분, 호안구분설명, 호안형식, 호안형식설명, 호안구간 연장(m), 호안폭(m)
수위조절	하구둑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연장(m), 높이(m), 제정표고(EL.m), 설계홍수량(m ³ /s), 설계홍수위(EL.m), 배수문 연장(m), 배수문 문비수(개), 배수문 폭(m), 배수문 높이(m), 어도 폭(m), 어도 형식, 어도 형식설명, 교량 연장(m), 교량 폭(m), 교량 차선수(차로), 교량 상부형식, 교량 상부형식설명
	홍수조절지	홍수조절지명,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유역면적(m ²), 개소수, 계획홍수위(EL.m), 최초조절수위(EL.m),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홍수조절용량(백만 m ³), 제수문 폭(m), 제수문 높이(m), 제수문 개수, 경보시설(Y/N)
	저류지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저류면적(km ²), 저류량(백만m ³), 유입부 월류폭(m), 유입부 계획고(EL.m), 유입부 계획홍수위(EL.m), 유출부 수문 유무(Y/N), 유출부 수문 폭(m), 유출부 수문 높이(m), 유출부 수문 개수(개), 유출부 관저고(EL.m), 유도배수로 유무(Y/N), 경보시설(Y/N)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명,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유수지 유무(Y/N), 유역면적(km ²), 유수지용량(백만m ³), 계획홍수위(EL.m), 펌프가동수위(EL.m), 펌프배제능력(m ³ /min), 침사지 개수(지), 흡수조 개수(지), 토출수조 개수(지), 펌프장 연면적(m ²), 문비수(개), 문비 폭(m), 문비 높이(m)
	수문	시설명, 하천수계,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하천기준 좌우위치, 하천기준 좌우위치설명, 설계홍수량(m ³ /s), 계획홍수위(EL.m), 수문바닥고(EL.m), 개폐소요시간(분), 유역면적(m ²), 수해면적(m ²), 문비 폭(m),문비 높이(m), 문비형식, 문비형식설명, 암거 연장(m), 암거 련수(련), 암거 높이(m), 암거 폭(m), 박스암거 여부, 날개벽 면적(m ²), 물받이 면적(m ²), 관리고 연장(m), 관리고 폭(m)
기타	보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등급설명, 연장(m), 높이(m), 설계홍수량(m ³ /s), 설계홍수위(EL.m), 설계 관리수위 상류(EL.m), 설계 관리수위 하류(EL.m), 문짝 종류(개폐방식), 문짝 종류(개폐방식)설명, 문짝 개수(개), 문짝 폭(m), 문짝 높이(m), 관리고 연장(m), 관리고 폭(m)

- 저수지(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저수지	저수지	표준유역코드, 표준유역, 수계연계운영, 수원공구분, 유역면적, 수혜면적, 총저수량, 종합안전등급, 수질등급, 내진성능, 비상대처계획, 침수피해인원, 용도폐지, 제방 형식, 제방 형식 설명, 제방 높이, 제방 길이, 제방 체적, 여수로 형식, 여수로 설명, 물넘이 길이, 보조여수로, 사전방류시설, 취수시설 형식, 취수시설 설명, 보조 취수시설, 보조 취수시설 설명, 자동수위계, CCTV, 지진계측기, 누수계측기, 변위계측기, 수질측정기, 예·경보시설, 관리소(동), 소수력발전, 수상태양광발전, 지역주민 활용공간

- 댐(1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댐	댐	시설명, 댐_설명, 댐_형식, 댐_설명, 내진성능, 내진성능 설명, 저수지(호), 하천명, 연계운영, 비상대처계획연도, 유역면적(m^2), 저수면적(m^2), 댐_높이(m), 댐_길이(m), 댐마루_폭(m), 댐_체적(m^3), 상류사면보호공, 상류사면보호공 설명, 마루표고(m), 심벽정고(m), 파라펫월, 총저수용량(m^3), 유효저수용량(m^3), 홍수조절용량(m^3), 비활용용량(m^3), 사수용량(m^3), 비상용량(m^3), 최고수위, 계획홍수위, 상시만수위, 홍수기제한수위, 저수위, 사수위, 용수공급가능수위, 계획홍수량(m^3/s), 설계홍수량(m^3/s), 계획방류량(m^3/s), 설계방류량(m^3/s), 연간용수공급계획량(m^3), 생공용수공급계획량(m^3), 관개용수공급계획량(m^3), 유지용수공급계획량(m^3), 지진가속도계, 침투량계, 외부변위계

- 하수도(2종)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공공하수처리 시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시설용량($\text{m}^3/\text{일}$), 하수처리량($\text{m}^3/\text{일}$), 처리구역 면적(km^2), 하수처리방식, 하수처리방식설명, 침사지 수량(지), 침사지 연면적(m^2), 최초침전지 수량(지), 최초침전지 연면적(m^2), 포기조 수량(지), 포기조 연면적(m^2), 기타 시설 면적(m^2), 고도처리시설 설치유무
하수관로	관로	총 연장(m), 합류식 관로 연장(m), 합류식 관로 암거사각형(m), 합류식 관로 암거원형(m), 합류식 관로 개거(m), 합류식 관로 측구(m), 분류식 관로 연장(m), 분류식 오수관로 연장(m), 분류식 오수관로 암거사각형 연장(m), 분류식 오수관로 암거원형 연장(m), 분류식 우수관로 연장(m), 분류식 우수관로 암거사각형(m), 분류식 우수관로 암거원형(m), 분류식 우수관로 개거(m), 분류식 우수관로 측구(m), 관종, 관종설명, 합류식 맨홀 개소수(개), 분류식 맨홀 개소수(개), 분류식 오수 맨홀 개소수(개), 분류식 우수 맨홀 개소수(개)

유지관리정보 분류체계(제21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
점검진단	시설번호	관리번호	관리정보의 시설번호와 동일
	점검진단 종류	점검실시 법령	해당 시설의 점검진단 수행에 대한 내용이 고시된 관련법령
		점검일자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점검진단명	-
		점검종류	-
		점검진단 총금액(원)	-
		해당시설 투입금액(원)	-
	점검진단 결과	종합성능평가 등급	점검진단 결과 중 종합성능평가등급
		안전성능등급	점검진단 결과 중 안전성능 등급
		내구성능등급	점검진단 결과 중 내구성능 등급
		사용성능등급	점검진단 결과 중 사용성능 등급
보수보강	시설번호	관리번호	-
	보수보강 공사	공사일자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공사이름	-
		공사내용	-
		보수보강종류	-
		보수보강공사 총금액(원)	-
		해당시설 투입금액(원)	-
성능개선	시설번호	관리번호	-
	성능개선 공사	공사일자	시작일자/종료일자 (YYYYMMDD)
		공사이름	-
		공사내용	-
		성능개선공사 종류	-
		성능개선 공사 총금액(원)	-
		해당시설 투입금액(원)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 구분별)

(시설물 수 / 관리주체 수)

구분		교통					유통공급							방재			환경
기반시설	합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댐	저수지	하천	하수도
				항만	어항												
합계	000,000 0,000	000,000 0,00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민간																	

[자료 추출일 : . . .]

기반시설 현황표(시설물 종류별)

(시설물 수 / 관리주체 수)

구분	기반시설	시설물 종류	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민간
합계								
교통	1. 도로	8종 / 계						
	주요시설(7)	교량						
		철토사면						
		보도육교						
		차도						
		터널						
		지하차도						
		옹벽						
	부시설(1)	지하통로						
	2. 철도	47종 / 계						
	건축물(3)	역사						
		역사외건축물						
		건축설비						
	통신시설물 (7)	역무통신설비						
		역무자동설비						
		선로설비						
		영상설비						
		전화교환설비						
		전송설비						
		무선설비						
	전력시설물 -전차선로 (6)	합성전차선						
		급전선						
		기기설비						
		장치류						
		지지물						
		안전보호설비						
교통	전력시설물 -전력설비	제어설비(전력)						

구분	기반시설	시설물 종류	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민간	
	(5)	전력기기												
		소방설비												
		조명설비												
		배전선로												
	신호시설물 (5)	건널목안전설비												
		열차제어장치												
		열차검지장치												
		선로전환기장치												
		안전설비												
	전력시설물 -송변전(6)	교류변전기기												
		제어설비(송변)												
		직류변전기기												
		지중송전선로												
		가공송전선로												
		부대설비												
	선로시설물 (4)	도상												
		레일												
		침목												
		분기기												
	구조물(11)	하수로												
		교량												
		비탈면												
		배수로												
		여객통로												
		승강장												
		옹벽												
		지하도												
		터널												
		구교												
		방호벽												
교통	3. 항만(항만)	14종 / 계												
	계류시설(6)	돌핀												
		잔교												

구분	기반시설	시설물 종류	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민간	
		선착장												
		소형선부두												
		부잔교												
		안벽												
	외곽시설(6)	방파제												
		갑문												
		도류제												
		호안												
		방사제												
		파제제												
	건축시설(1)	건축물												
	임항교통시설(1)	교량												
	3. 항만(어항)	14종 / 계												
	계류시설(8)	선류장												
		잔교												
		선착장												
		부잔교												
		안벽												
		선양장												
		물양장												
		도선장												
	외곽시설(6)	방파제												
		돌제												
		도류제												
		호안												
		방사제												
		파제제												
교통	4. 공항	23종 / 계												
	항공등화시설(1)	조명시설												
	건축시설(4)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관제탑												

구분	기반시설	시설물 종류	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민간	
	기계시설(2)	기타건축물												
		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												
	전력전기 소방시설(2)	전기소방시설												
		수변전시설												
	항행시설(4)	관제통신시설												
		계기착륙시설												
		레이더시설												
	토목시설(7)	레이더처리장치												
		교량												
		갑문												
		옹벽												
		하수처리시설												
		터널·지하차도												
		공동구												
	이착륙시설 (3)	수도시설												
		계류장												
		유도로												
	유통 공급	활주로												
		5. 수도	7종 / 계											
		정수시설(1)	정수장											
		배수시설(1)	배수지											
		취수시설(1)	취수장											
		상수관로(3)	도수관											
			배수관											
		송수관	송수관											
			가압장											
유통 공급	6. 전기	5종 / 계												
	가공선로(3)	전선및금구류												
		철탑(구조물)												
		철탑부지												
	지중선로(2)	케이블접속함												
		전력구												
	7. 가스	1종 / 계												

구분	기반시설	시설물 종류	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민간	
	가스관(1)	가스배관												
	8. 열공급	1종 / 계												
	열수송관(1)	열수송관												
	9. 통신	1종 / 계												
	본체(1)	본체												
	10. 공동구	1종 / 계												
	공동구(1)	본체												
	11. 송유	1종 / 계												
	주요시설(1)	송유관												
방재	12. 댐	1종 / 계												
	댐(1)	댐												
	13. 저수지	1종 / 계												
	저수지(1)	저수지												
	14. 하천	8종 / 계												
	수위조절(5)	하구둑												
		홍수조절지												
		수문												
		배수펌프장												
	물길안정(2)	저류지												
		제방												
		호안												
	기타(1)	보												
환경 기초	15. 하수도	2종 / 계												
	공공하수 처리시설(1)	하수처리장												
	하수관로(1)	관로												

[자료 추출일 : . .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 요청·결과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연계 요청서 (요청기관 작성)							
시스템 세부 사항	시스템명				요청기관명		
	홈페이지(URL)				개발언어		
	서버사양				운영체제		
	웹서버				WAS서버		
담당자	기관명/부서명	/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사업 개요	사업명						
	주관부서				소요예산		
	사업기간	총사업			사업단계		
		연계사업					
	사업유형 (복수가능)	BPR/ISP	SW 개발		DB 구축	장비구매	기타
사업 주요내용	사업개요						
	보유정보						
연계 근거	법적근거						
	관련정책						
연계 내용	연계목적						
	연계요청 항목						
검토 결과서(시스템 운영기관 작성)							
연계근거 검토	기반터						
	연계근거 적합성						
	요청기관 근거 적합성						
연계시스템 중복성 검토		(중복, 미중복)		중복 시스템명			
연계 항목 검토	가능	항목					
		사유					
	불가능	항목					
		사유					
검토의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연계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기관)	신청인 성명 (기관명)		담당부서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기반터 ID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적용 시스템 세부 사항	시스템명		개발언어
	서버IP		홈페이지(URL)
	서버사양		운영체제
	웹서버		WAS서버
업무 담당	부서명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시스템 담당	소속회사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요청정보 (서버간 연계인 경우 API 명)			
이용목적			
적용 소관업무			
관계자 범위			
제공방법		☐ 서버 간 연계 ☐ 인터넷 조회 ☐ 1회 단발 제공	
제공주기 (서버간 연계인 경우)		☐ 1일 1회 ☐ 기타()	
제공기간			
정보보안 조치방법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_____ (인)

운영기관의 장 귀하